

2025-2026

학생

행동 규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연방과 주 법률,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정책과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행정 규정과 다른 규정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책자의 해당되는 내용과 참고 문헌보다 우선시 됩니다.

학생

이름

전화번호





가치

학습
존중
관계
우수함
공평

비전

미래 준비

모든 학생은 지역사회와 그 너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적응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자신감을 갖추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공할 준비가 되어 졸업을 합니다.

사명

잠재력 발휘

모든 학생이 강력한 비평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학업적 기초를 쌓으며, 학습을 강화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모든 학생이 회복력과 적응력을 키우고, 평생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갖습니다. 모든 학생이 의미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자이자 협력자가 됩니다. 모든 학생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직업적 삶에서 성공할 준비가 됩니다.

교육위원회

Ms. Julie Yang
의장

Ms. Grace Rivera-Oven
부의장

Ms. Rita Montoya

Ms. Karla Silvestre

Mrs. Laura Stewart

Ms. Brenda Wolff

Ms. Natalie Zimmerman

Ms. Anuva Maloo
학생의원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Thomas W. Taylor, Ed.D., M.B.A.
교육감

15 West Gude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0
www.montgomeryschoolsmd.org

목차

바로 찾아 볼 수 있는 안내 가이드	1
서문	3
1부: 행동 및 안전 철학	3
2부: 행동 개입 매트릭스.	4
자주 묻는 질문.	6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매트릭스.	12
행동 중재/Behavior Interventions	26
학생의 행동 중재, 안전과 웰빙을 위한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	29
차별 금지 성명.	본 책자 뒷면
(법률에 따라 조직도가 완성되고 승인되면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안내 가이드 학생용 자료

위기 비상 전화 핫라인

24시간 정보 제공, 연계/리퍼 및 지원 대화

Montgomery County 위기

핫라인/EveryMind/ 988
와 <https://www.every-mind.org/>

직원이 배치된 직통 전화선(Hotline)과 더불어 해당 웹사이트에서 24시간 채팅을 제공합니다.

Montgomery County 위기관리 센터 240-777-4000

위기관리 센터는 정신건강의 위기를 겪는 개인을 위해 연중무휴 (주7일 24시간) 무료로 위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revor Project 866-488-7386; 문자 메시지 678 678

Montgomery County 청소년 위기 직통 전화선 (Youth Crisis Hotline) 988

24시간 전화로 적극 경청 및 추천 서비스를 통해 훈련된 카운슬러가 익명 및 비밀 보장을 제공합니다.

안전/보안 관련사항 보고

MCPS Division of Safety and Emergency Management . . 240-740-3066

안전한 MCPS 학교와 사무실을 위한 MCPS 책임 담당 사무실

MCPS 학생 행동 및 이의제기(Student Conduct and Appeals) SCA@mcpsmd.org 또는 TitleIX@mcpsmd.org. 240-740-3215

MCPS 교육구 전체 담당 Title IX 코디네이터와 교육구 전체 담당 아동학대와 방임 연락처 학생 행동 및 이의제기 (Student Conduct and Appeals -SCA) 웹사이트: www.montgomeryschoolsmd.org/compliance/. SCA는 학교폭력/왕따/불링, 희롱(Title IX 성희롱 포함)과 위협 및 협박, 아동 학대와 방치, 증오 편견, 괴롭히기/신고식, 성 정체성 문제 등에 관한 인간에 관련된 문제의 정책, 규정, 지침을 지속적이며 종합적으로 적용하도록 학교, Division of Legal Services 및 기타 MCPS 사무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MCPS 사이버 안전 투서함

(Cyber Safety dropbox): . . CyberSafety@mcpsmd.org
MCPS의 부적절한 온라인 활동을 신고할 수 있는 투서함 (Dropbox)

사이버폭력 톨라인 1-800-843-5678

성적 행위를 위한 아동의 온라인 유인 행위, 가족 외의 아동 성추행, 아동 포르노, 아동 성 관광, 아동 성매매, 아동에게 보내는 원치 않는 음란물, 인터넷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도메인 이름, 단어 또는 디지털 이미지 등 의심되는 활동을 신고할 수 있는 연중무휴(주7일 24시간) 직통 전화선(Hotline)입니다.

Safe Schools Maryland Hotline 833-MD-B-Safe (833-632-7233)

학생, 교사, 교직원, 학부모 및 일반 대중이 익명으로 정신 건강 문제를 포함한 학교 또는 학생 안전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연중무휴 24시간 무료 시스템입니다. 사건에 관한 정보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며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의 담당 사무실과 공유됩니다.

Montgomery 카운티 아동보호 서비스(Montgomery County Child Protective Services),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4시간) 240-777-4417 또는 240-777-4815 TTY
아동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Montgomery County Child Protective Services에 신고할 수 있는 연중무휴 24/7(7일 24시간) 신고 직통 전화선(Hotline)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취약한 성인을 위한 보호 서비스(Montgomery County Adult Protective Services for Vulnerable Adults) 240-777-3000, 240-777-4815 TTY
성인 학대 및 방임을 신고할 수 있는 연중무휴 24/7 (7일 24시간) 신고 직통 전화선(Hotline).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 특수 피해자 조사국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 Special Victims Investigation Division)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 신체적 아동학대, 가출, 실종 아동, 가정폭력 중범죄, 노인학대/취약한 성인학대, 성범죄자 등록위반 등을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에 신고할 수 있는 연중무휴 24/7 (7일 24시간) 직통 전화선(Hotline)입니다.

Montgomery 카운티 경찰서:

마약 및 폭력조직 상담 전화

(Drug and Gang Tip Hotline) 240-773-GANG (4264) 또는 240-773-DRUG (3784)

익명으로 Montgomery County의 불법 마약/폭력조직 관련 활동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연중무휴 24/7 (7일 24시간) 직통 전화선(Hotline)입니다.

MCPS 리소스

카운티 학생회 단체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tudent-leadership

Director, Student Leadership Activities . . .240-740-3977

교육위원회 학생위원

www.montgomeryschoolsmd.org/boe/members/student.aspx

교육위원회(Office of the Board of Education) 240-740-3030

Chief of the Division of School Leadership and Improvement 240-740-3100

Division of Specialized Support Services . .240-740-5630

Section 504 Coordinator 240-987-8031

MONTGOMERY 비상이 아닌 경우 리소스

Montgomery County Police(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서)

비상이 아닌 경우 301-279-8000

Montgomery 카운티 보건과 복지 서비스 안내 전화

보건복지부 관련 일반 정보(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General Information)311, 301-251-4850 TTY
Montgomery 카운티 외 거주자 240-777-0311

교육구 정보와 비상시 안내

MCPS와의 지속적인 연결 www.montgomeryschoolsmd.org

다음들 통해 교육구 전체 정보와 비상시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MCPS 트위터 Twitter [www.twitter.com/mcps](https://twitter.com/mcps)

MCPS en Español [www.twitter.com/mcpsespanol](https://twitter.com/mcpsespanol)

MCPS 페이스북 Facebook . . www.facebook.com/mcpsmd

MCPS en Español . . . www.facebook.com/mcpsespanol

Alert MCPS 비상안내 . . . www.montgomeryschoolsmd.org/alertMCPS



교육구 정보와 비상시 안내(계속)

MCPS 퀵노트 이메일 메시지와 학부모통신: . www.mcpsQuickNotes.org

Ask MCPS 정보 서비스

전화 240-740-3000

스페인어 핫라인 240-740-2845

이메일 AskMCPS@mcpsmd.org

MCPS 공보실(Public Information Office) . . . 240-740-2837

MCPS TV 방송 www.mcpsTV.org;

Comcast 34, 998; RCN 89, 1058; Verizon 36

비상 및 날씨 안내(녹음): 301-279-3673. . . . 301-279-3673

MCPS 웹사이트자료

www.montgomeryschoolsmd.org

검색:

MCPS 학교 안내(MCPS School Directory)

MCPS 교직원 연락처(MCPS Staff Directory)

MCPS 전략 계획(Strategic Plan)

운동 경기(Athletics)

건강한 365일(Be Well 365)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

학교폭력/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학교 버스 노선(Bus Routes)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Child Abuse and Neglect)

대학과 진로센터(College and Career Center)

상식 교육 (Common Sense Education)

학과목 안내(Course Bulletin)

사이버 예절과 사이버 안전(Cybercivility and CyberSafety)

졸업요건(Diploma Requirements)

폭력조직과 폭력조직 활동(Gangs and Gang Activity)

MCPS 웹사이트 자료 (계속)

www.montgomeryschoolsmd.org

성적 채점과 성적표 보고(Grading and Reporting)

종교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지침서
(Guidelines for Respecting Religious Diversity)

학생의 성 정체성에 관한 지침
(Guidelines for Student Gender Identity)

점심 급식 메뉴(Lunch Menus)

Maryland 주 고등학교 평가(High School Assessments)

차별 금지(Nondiscrimination)

졸업을 위한 온라인과정
(Online Pathway to Graduation)

체육(Physical Education)

정책 및 규정(Policies and Regulations)

심리, 정신관련 서비스(Psychological Services)

학생 담당 서비스(Pupil Personnel Services)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 신고
(Reporting Allegations of Child Abuse and Neglect)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학교 상담 서비스(School Counseling Services)

학교 보건 서비스 (School Health Services)

학교 안전(School Safety)

성희롱(Sexual Harassment)

소셜 미디어 디지털 시민의식
(Social Media Digital Citizenship)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

특별 프로그램(Special Programs)

전략적 계획 수립(Strategic Planning)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

학생 온라인 e학습 (Student eLearning)

학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Student Privacy)

학생봉사학습(Student Service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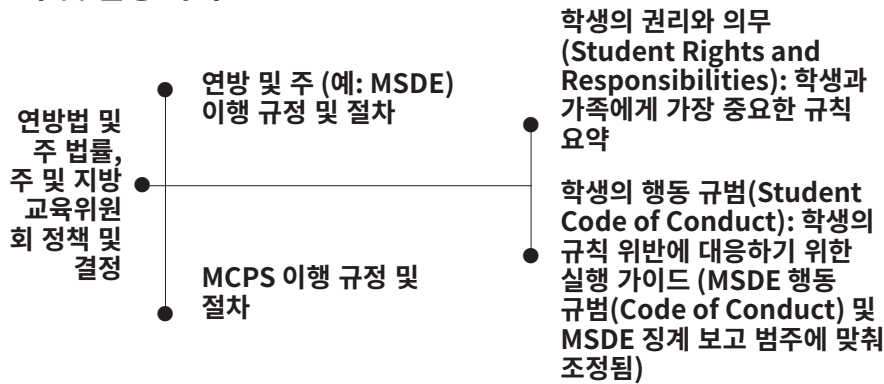
자살 예방(Suicide Prevention)

여름학교(Summer School)

서론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보호자가 질서 있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행 지침입니다. 이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행동 기대치, 안전 및 개입과 관련하여 Maryland 법률, Montgomery 카운티 교육 위원회 정책 및 MCPS 규정(이하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은 학생이 규칙을 위반할 때 교직원, 학생, 학부모/보호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행 지침입니다. 이 책자에는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누구나 MCPS 웹사이트에 있는 정책 및 규정 핸드북(Policy and Regulations Handbook)에서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의 전체 텍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학생과 가족에게 가장 관심 있는 정책과 규정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첨부 문서인 MCPS의 학생 권리 및 책임 가이드(A Guide to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를 참조하십시오.

요약 및 실행 가이드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은 MCPS 소유지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MCPS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부지, MCPS가 소유, 운영 또는 임대하는 MCPS 버스 및 기타 차량, 학생이 참여하는 MCPS 후원 활동(예: 견학, 졸업 파티 또는 교내 운동 경기)의 시설 및/또는 부지를 포함한 모든 MCPS 부지가 포함됩니다. 학교 시간 외에 학교 소유지 밖에서 발생한 학생의 부정행위는 교장이 그 부정행위가 학교 환경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경우 또는 그 부정행위가 학교 활동에 상당한 방해나 물질적 간섭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행동 규범의 첫 번째 부분은 징계 정책에 대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한 교육위원회의 행동 및 안전 철학에 대한 성명입니다. 학생의 행동 규범의 두 번째 부분은 MSDE 부정행위 규정을 나열하고 각 규정에 대한 가능한 행동 개입을 권장하는 차트입니다. 이는 행동 개입 매트릭스라고 하며 7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6페이지부터 제공됩니다. 부록에는 추가 지원 정보가 있습니다.

1부: 행동 및 안전 철학

교육 및 학습에 전념하는 질서 있고 안전한 학습 환경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기대를 제시하는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Policy JGA, Behavior Intervention, Safety, and Well-being Plan에 책정된 바에 따라, MCPS 학교는 효과적인 학습에 필요한 긍정적이고 존중하며 질서 있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 성취도를 향상하기 위해; 그리고 학생의 잘못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한 예방하는 긍정적인 학교 문화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합니다.

교육위원회는 MCPS가 학생, 학부모/후견인, 교직원 모두가 협력하고, 서로에게 가치를 두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학습과 교습에 집중할 수 있는 질서 있고 안전한 긍정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식이 통하는 훈육을 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일 안전하며 성공적인 교육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면 다음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 학생은 자신의 학습과 개인 행동,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의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MCPS의 정책 및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자녀가 경험하고 있을 수 있는 태도 문제와 학생의 행동 문제 (학생이 직접하거나 학생을 향한 행동 포함)를 해결하기 위해 MCPS 교직원과 협력해야 합니다. 즉, 학부모/보호자는 자녀가 학교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보호자는 모든 학생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이며, 안전하고, 환영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 **MCPS 직원**은 기대되는 긍정적 행동을 모델로 삼아야 하며 효과적인 학습에 필요한 상호 존중과 존엄성을 갖춘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사는 적절한 종류의 긍정적인 행동 조정 전략과 조력을 사용하여 학생의 행동을 지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교직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학습 환경의 안전과 보안을 침해할 때,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 금지, 형평성, 문화적 이해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에 따라 비례적이고 발달적으로 적절하며 일관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결과를 사용하여 개입해야 합니다.
- **MARYLAND 법**에 따르면 MCPS는 학생에게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상처나 실수를 고치고 관계를 회복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회복적 관계를 회복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회복적 관계에 중심을 둔 접근방법을 통해 훈육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
 - » 이 훈육 조치의 기본 목적은 갱생, 회복, 교육입니다.
 - » 그 방법은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 » 관계와 기대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 피해에 대응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 **주법 및 MSDE 지침**에 따라 MCPS는 다음을 채택해야 합니다 -
 - » 행동 개입의 연속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학습에 도움이 되고 학업 성취를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적절한 긴장 완화 전략과 기술
- **퇴학, 정학 및 퇴학은 주법을 준수하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

Board Policy ACA, 차별금지, 형평성, 문화적 이해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에서 정한 바와 같이 차별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차별은 모든 학생과 직원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하는 MCPS의 노력과 우리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기울여온 노력의 가치인 모두에 대한 형평, 포용, 관용의 성취를 방해합니다.

2부: 행동 개입 매트릭스

MCPS는 적절한 행동/태도를 배우는 것은 학생의 발달 과정의 일부이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단계적인 대응과 개입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행동 및 발달적 요구를 충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교실 개입(classroom interventions)**(조치 단계 1-2), **학교장 개입(principal interventions)**(조치 단계 3-4) 및 **교육감 개입**(조치 단계 5)에 대한 설명은 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의 표에 설명된 행동 개입 수준은 다음과 같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 나열된 위반 사항은 Maryland 주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MSDE) 학생 기록 보관자 매뉴얼(Student Recordkeepers Manual)에 명시된 징계

규정과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각 위반 사항에 대한 설명은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 행동에 대한 대응은 발달적, 연령적 측면에서 적절해야 하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처벌은 일관되고 공정하며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모든 학생의 개인적 성장과 학습 기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직원은 다음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 » 학생 징계에 있어서 차별적 편견과 불균형을 인식하고 제거하고, 징계 규칙을 일관되고 공정하며 공평하게 시행합니다.
 - »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공동체 창조와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 » 마지막 방법으로만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야 하며¹, 가능한 한 빨리 복귀시켜야 합니다.
- 처음으로 부적절하거나 방해가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학교 교직원은 이 기반에 명시된 단계 중, 제일 낮은 단계에서 한 종류 이상의 중재 또는 훈육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는 중재나 훈육조치 중 제일 낮은 수준) 그러나 때때로 학교 직원이 어떤 행동이 처음 나타났을 때 더 강력한 대응을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6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참조)

¹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8.01.11(A)(6)

자주 받는 질문

완화 기준

행동 개입(Behavior interventions)은 사건을 둘러싼 상황의 총체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생의 나이,
-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생의 발달적 이해
- 학생의 학습적 필요나 학생의 삶의 부정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 진단되지 않은 상황 및
- 학생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언어적 요인

가중 기준

학교장은 아래 기준을 고려한 후 보다 높은 수준의 개입을 통해 대응할 재량권을 갖습니다.

- 이전의 비행 행위, 이전에 발생한 비행 행위의 횟수, 그리고 그러한 비행에 대해 이미 시행되었으나 모두 소진되었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점진적 징계 조치
-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임박한 위협
-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부정행위
- 교육 과정/운영의 중단
- 행동으로 인한 부상
- 증오를 조장하는 언어 사용 또는 이미지 및/또는 기호 표시

학생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를 입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피해를 목격한 학생은 학교 행정이나 카운스럴에게 지원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의 앞부분에 있는 빠른 참조 가이드(Quick Reference Guide)를 참조하여 MCPS 내와 외부 지원 소스를 확인합니다.

학교장이나 교사가 매트릭스에서 권장하는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개입을 할 수 있나요?

예, 완화 사유가 있으면 실수의 심각성과 대응 수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완화 기준(Mitigating criteria)**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학생의 나이,
-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생의 발달적 이해
- 학생의 학습적 필요나 학생의 삶의 부정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 진단되지 않은 상황 및/또는
- 학생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언어적 요인

행동 개입의 목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발생한 피해를 복구할 의무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격려하여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실수로부터 배우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교장은 언제 더 높은 수준의 개입을 하게 되나요?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실수나 범죄가 더 심각해지거나 악화될 수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대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Maryland 주법에 따르면 행동 개입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학교와 정규 학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Maryland 주법은 학교장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허용합니다. 학교장은 아래의 **가중 기준**을 고려한 후 더 높은 수준의 개입으로 대응할 재량권을 갖습니다.

- 이전 부정행위, 이전 부정행위 횟수, 소진되었거나 효과가 없다고 간주된 점진적 징계 조치
-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임박한 위협
-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부정행위
- 교육 과정/운영의 중단
- 행동으로 인한 부상
- 증오를 조장하는 언어 사용 또는 이미지 및/또는 기호 표시

학교장은 매트릭스에 표시된 최고 수준보다 높거나 최저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조치 단계를 취하기 전에 Department of School Leadership and Improvement(DLSI)의 지역 부교육감(associate superintendent)과 이를 협의해야 합니다. 정학 또는 퇴학 수준에 대한 대응을 가중하는 데 대한 고려 사항은 6페이지를 참조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증오심을 조장하는 언어 사용이나 이미지 및/또는 상징 표시가 학교폭력/따돌림/불링, 괴롭힘, 협박, 또는 재산 파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건 또는 학교나 학구 운영이나 활동에 상당한 방해가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징계 대응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이에 개인적 특성에 근거하여 증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언어나 이미지 및/또는 기호의 표시, 포함, 언급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 금지, 형평성 및 문화적 이해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인종적 비방이 포함됩니다.

표1: 매트릭스에서 사용하는 행동 개입 조치 단계

조치 단계 1	교실 및 교사 기반 교사는 수업 기술과 행동 관리 전략을 사용하여 교실과 학생의 정규 학업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고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기여하며, 학습 커뮤니티에서 성공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회복조치(교실 내) • 구두로의 교정, 상기시키기/재지도, 서면으로의 반성/사죄, 롤 플레이, 일일진도표 • 격리(디텐션) • 부모/보호자 연락(필요한 경우 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로 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논의) » 학생들의 수업 행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학교 일과 외의 학생 경험 » 현재까지 구현된 전략/방법과 향후 전략/방법 » 학교 내의 비공식 및 예방 멘토링, » 학교 내의 갈등해결 • 카운슬러 또는 학생 Student Well-being 팀에게 인계
조치 단계 2	상담 및 지원 리소스를 갖춘 교실 및 교사 기반 교사는 학부모/보호자 및 기타 지원 직원을 참여시켜 수업과 학생의 정규 학업 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 기법과 행동 관리 전략을 조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해진 피해를 복구하고, 학습 커뮤니티와 학생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원 리소스와 협의하여, 직원들은 문제가 되는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완화 요소를 고려합니다. 조치 단계 2 전략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추가합니다. • 모든 조치 단계 1 옵션(교사의 재량에 따라) • 학부모/보호자와 학생 면담(교사 및/또는 지원 담당 교직원과 함께) • 회복적 실행(교실 기반 또는 회복적 정의 코치, 전문가 또는 기타 지원 직원이 진행) • 교육관리팀(Educational Management Team)과의 상의/협의 » 기능 중심의 행동평가/행동중재 계획 » 행동 계약 » 지역사회 내 서비스 » 학교 카운슬러/자원 전문가와의 계획된 체크인 » MCPS 또는 커뮤니티 리소스로 인계
조치 단계 3	학교장 기반 학교장은 학부모/보호자 및 기타 지원 교직원을 참여시켜 학생에게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타인이나 학생의 학습 공동체, 그리고 학생 자신의 학습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행동 관리 전략(Behavior management strategies)은 학생을 정규 학업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학생을 잠시 교실에서 빼낸 후 가능한 한 빨리 교실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치 단계 3 대응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전략/방법을 적용합니다: • 모든 조치 단계1과 2 옵션(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 면담(학교장과 함께)에서 논의 - » 조치 단계 2에서 논의된 모든 옵션 » 학교장, 학교 카운슬러 또는 리소스 전문가와의 계획된 체크인 » 교사, 학생, 학부모/보호자 면담 • 회복적 실행(교실 기반 또는 회복적 정의 코치, 전문가 또는 기타 지원 직원이 진행) • 손해배상 • 학과외 활동 참여에 대한 시간적 제한 • 교내 중재 • 교내 정학

표1: 매트릭스에서 사용하는 행동 개입 조치 단계

조치 단계 4	학교장 기반 학교장은 학부모/보호자 및 기타 지원 교직원을 참여시켜 학생에게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타인이나 학생의 학습 공동체, 그리고 학생 자신의 학습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행동 관리 전략(Behavior management strategies)은 학생을 정규 학업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학생을 잠시 학교에서 빼낸 후 ² 가능한 한 빨리 교실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치 단계 4 대응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전략/방법을 적용합니다: • 모든 조치 단계1, 2와 3 옵션(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 단기 정학(3일 이내) • 장기 정학(4-10일)
조치 단계 5	교육감/대리인 기반 이러한 대응은 11-44일간의 장기 정학 처분 또는 45일 이상의 퇴학 처분(조치 단계5)으로 학생은 정규 학업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장기 정지 또는 퇴학은 Maryland 법률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임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 학생이 교육 과정을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하루 종일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또한, 사용 가능한 적절한 행동 개입 및 징계 조치들이 모두 시행되었으나 효과가 없었을 경우 •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학생이 격리되는 기간을 실행가능한 제일 짧은 기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MCPS는 격리된 학생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비교 가능한 교육 서비스와 » 학생이 정규 학업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³

버스에서도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이 적용됩니까?

예,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은 MCPS 소유지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며, 정의에 따르면 MCPS가 소유, 운영 또는 임대하는 버스 및 기타 차량이 포함됩니다.⁴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를 위반하는 행동이나 안전 규칙을 위반한 학생은 스쿨버스를 타는 혜택을 임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학교장에 의해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1) 스쿨버스 운전자는 학생의 스쿨버스에서의 행동과 훈육 문제를 MCPS Form 555-3, School Bus Disciplinary Report를 사용하여 학교장에게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2) 학교가 취하는 행동으로 훈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다음 조치를 위해 MCP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학군 수퍼바이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학생이 학교 밖에서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예. 학생의 MCPS 소유지 밖에서 발생하는 위법/부정행위는 학습 환경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관계없이 학교 환경과 연결되어 다른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교육 환경을 방해하는 경우 MCPS 징계 조치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언제 수업에서 제외되나요?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하는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시행되어야 하며, 학생이 가능한 한 빨리 수업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격리(Removal)’는 학생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타임아웃, 방과 후 남기, 교장실 방문, 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처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격리’ 조치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누가 그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행동 조치 매트릭스(Matrix)를 참고해 주세요.

²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8.01.11(A)(6)

³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8.01.11B(2),(3)

⁴MCPS Regulation EEA-RA, Student Transportation

쉬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나요?

그 여부는 **이유와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MSDE 체육(physical education) 지침에 따르면, 학교 직원은 처벌의 수단으로 신체 활동이나 쉬는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정책은 어린 학생들이 놀이와 대근육 발달을 위한 신체 활동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는 시간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이 합리적인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조치하는 것은 '처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안전상의 우려(Reasonable safety concerns)"는 교장의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학생의 행동은 학교장 또는 지정자, 카운슬러, 학교 심리사, 학생 생활지도 담당자, 또는 기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입은 쉬는 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는 시간, 놀이, 신체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러 명의 학생에게 단체로 벌을 줄 수 있나요?

아니요. } 일부 학생의 행동을 이유로 전체 학생 그룹에게 징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더라도, 교사는 학급 전원을 방과 후 남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을 한 학생을 알 수 없는 경우이라도 이 규칙은 적용됩니다.

학생 또는 학급 전체에게 벌로 학습 과제를 부과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교사는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 과제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예: 학생에게 문장을 반복해서 쓰게 하거나 사전을 베끼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하지만, 학생이 수강 중인 수업과 관련된 의미 있는 내용을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과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행동이 다른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쓰는 것은 허용 가능한 학습 활동입니다.

행동 중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편, 표절이나 성적 기록 조작 등 학업적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는 MCPS Regulation IKA-RA, 성적 평가 및 복(Grading and Reporting)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CAN STUDENT PUNISH A STUDENT PHYSICALLY?

학생은 신체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Maryland 법에 따르면, 학교 담당 직원이 싸움을 말리거나, 폭력을 억제하거나, 난폭한 학생을 제지하고자 적절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규제의 사용은 MCPS Regulation JGA-RA:학급 운영과 학생 행동 중재(Student Behavior Interventions)와 Regulation COB-RA, 보고할 수 있는 사건사고(Reportable Incidents)에 명시되어 있는 제한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MCPS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급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인 행동 규범을 만들 수 있나요?

예.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장려받습니다. 그러나 단, 학급 또는 학교 차원의 행동 규범은 법률,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 또는 규칙, 그리고 전반적인 시스템 핸드북 및 지침과 모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교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목록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표현으로 스스로 행동 강령을 만들어 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1. 나와 타인을 위해 존중하는 말, 행동, 태도를 갖습니다.
2. 나는 지각하지 않기, 적절한 옷 입기, 공부에 집중하기를 통해 나 자신과 내 미래 그리고 내 학교에 대한 긍지를 보여주겠습니다.
3. 나는 항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일 평화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며 나 자신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없을 때 교사, 학교 행정담당자, 학교 교직원에게 도움을 받겠습니다.
4. 나는 학교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고치겠습니다.
5. 나는 우리 학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학습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복적 정의란 무엇입니까?

Maryland 법에 따르면, 모든 징계 조치의 주된 목적은 회복적이고, 교육적이며, 재할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회복적 실천(restorative practices)의 핵심 요소이며 회복적 정의는 학교의 안전 확보 노력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The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은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을 지고, 학습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동 개입(Behavior Interventions) 목록은 26-28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MCPS 소유지에서 위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MCPS 소유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와 직장에서 최고의 결과를 성취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와 직업환경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MCPS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개입 및 회복적 정의 절차와는 별개로, MCPS는 Montgomery 카운티 법 집행 기관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강도, 갇힌 관련 사건/범죄, 총기 소지, 비동의 성적 행위 등 범죄 행위나, 폭탄 위협/파괴 장치/폭발물, 방화 또는 방화 위협, 규제 약물 유통, 재산 파손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당 MOU의 시행 및 MCPS 소유지 내 범죄나 중대한 사건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규정 COB-RA, 사건 보고(Incident Reporting)를 참조하십시오.)

학생은 언제 정학(SUSPENSION) 또는 퇴학(EXPULSION)을 당하게 되나요?

Maryland 법에 따라, 행동 개입 매트릭스가 조치 단계 4를 나타내는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 내(in-school)" 정학(학년도당 10일 이하), "단기(short-term)" 학교 밖 정학(최대 3일), "장기(long-term)" 학교 밖 정학(4-10일)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11-44일의 장기 정지 또는 45일 이상의 퇴학(레벨 5)은 Maryland 법률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감/대리인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 시행됩니다.

1.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임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2. 학생이 교육 과정을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하루 종일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또한, 사용 가능한 적절한 행동 개입 및 징계 조치들이 모두 시행되었으나 효과가 없었을 경우
3.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학생이 격리되는 기간을 실행가능한 제일 짧은 기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4. MCPS는 수업시간에서 격리되는 학생에게 비슷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상수업으로 돌아갔을 때 성공적일 수 있도록 행동개선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 법에 따르면, 킨더가든 전(Pre-K)부터 2학년까지의 학생에 대해 정학(suspension) 및 퇴학(expulsion)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Maryland 법은 Pre-K-2학년 학생에 대한 정학 및 퇴학 조치에 대해 강화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중재 교육이나 도움으로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없는 다른 학생이나 직원에게 미치는 심각한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학교 심리학자나 정신 건강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장/대리인이 정학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승인을 위해 DLSI의 Learning, Achievement, and Administration 담당 디렉터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정학 기간은 5 수업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Pre-K-2학년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는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상황에 한정됩니다. MCPS Regulation JGA-RB, 정학/제적(Suspension or Expulsion)을 보십시오.

정학이나 퇴학에 대해 항소/이의제기를 수 있나요?

예, 정학이나 퇴학에 대해 항소/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또는 장기 정학 (10일 또는 10일 이내) 고려해야 할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 학교장에게 10일 이하의 정학의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즉시 이메일 또는 편지를 보냅니다. 학교장이 결정을 재고려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Division of Student Support and Attendance Services(DSSAS) 디렉터에게 학교장의 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학 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DPPAS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15일 이내에 Department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에 연락하여 교육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정학 또는 퇴학(10일 이상): 학교장이 퇴학을 권고한 경우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학생을 10일 이상 정학시키려는 모든 결정은 Department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를 통해 요청되어야 합니다.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은 교육감의 결정이므로 만약 학부모/보호자가 교육감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규칙을 잘못 적용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달력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교육위원회에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훈육을 이유로 대체 교습 프로그램에 있을 경우, 기간에 따라, 정학이나 퇴학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항소 절차는 정학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도 정학 또는 퇴학될 수 있나요?

예.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연방정부 법은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장애 학생의 권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MCPS Regulation JGA-RC, Policy JGA-RC, 장애 학생의 정학과 제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훈육을 이유로 대체 교습 프로그램에 있을 경우, MCPS Regulation JGA-RB, Suspension and Expulsion과 MCPS Regulation JGA-RC, Suspension and Expul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따라, 정학이나 퇴학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조치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교실과 교사가 인도하는 조치(예: 서면으로의 사죄, 학교 카운슬러와의 대화, 정학)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예: 지역사회 내 서비스)	행정 도움과 격리 조치 (예: 회복 조치, 학교 내 정학, 학교 내 개입, 도래 중재, 수업에서 일시적 제외)	행정 도움과 단기 교외 격리조치(예: 회복조치, 멘토 프로그램, 단기, 장기 정학)	장기 행정 도움, 학교 밖으로의 격리조치, 인계 조치(예: 연장 정학, 퇴학)	
적절한 개입 수준을 결정할 때 6페이지의 "인화" 및 "가중"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업 빠지기(101)	적절한 사유 없이 학교에 등교한 후 수업을 빠지는 경우 ¹					중, 고등학교만 해당
	적절한 사유 없이 계속 학교에 등교한 후 수업을 빠지는 경우 ^{1,2}					
지각(102) 참조MCPS Regulation JEA-RA: 학생의 출석(Student Attendance)	적절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수업이나 학교에 늦게 도착할 경우 ^{1,2}					중, 고등학교만 해당
	사유 없이 계속 수업에 늦게 들어가거나 늦게 등교하는 것. ^{1,2}					지각한 초등학생은 처벌이나 격리조치를 받지 않습니다만 부모/후견인에게 연락을 하게됩니다.
무단결석(103) 참조MCPS Regulation JEA-RA: 학생의 출석(Student Attendance)	인정되지 않는 사유의 학교 결석 ^{1,2}					지나치게 많은 결석(승인된 결석과 무단결석 모두)이나 지각을 한 학생은 학생 복지팀(Well-Being team-SWBT)에 인계될 수 있습니다. 학생 복지팀 SWBT는 반복적인 결석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개입을 하는 과정을 구현합니다. 결석이 누적된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학생의 출석에 관한 정기적인 통지를 받게 됩니다.
	무단결석 ³					

¹ 학생은 "출결석만에 관련된 문제의 경우" 퇴학 또는 정학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MD. ANN. CODE, EDUCATION § 7-305. 이는 다음 장에 명시된 행동에 적용됩니다: 수업을 빠지는 경우, 지각, 무단결석.

² 승인된 결석사유로는 지계 가족의 사망, 학생 또는 학생 자녀의 질병, 임신과 육아에 관련된 상태, 법원소환, 위험한 날씨 상태, 종교적 휴일, 주 비상상황, 정학, 학교가 승인 또는 후원하는 업무/일과 MCPS Regulation JEA-RA, Student Attendance; COMAR에 책정된 특정 상황입니다. 13A.08.01.03.

³ 각 분기에 8일 이상, 학기에 15일, 전체 학년도에 20일 이상(출석일의 약 10%)을 인정하지 않는 결석을 하였을 경우,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간주됩니다. MD. ANN.CODE, EDUCATION § 7-355.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조치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교실과 교사가 인도하는 조치(예: 서면으로의 사회, 학교 카운슬러와의 대화, 징학)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예: 지역사회 내 서비스)	행정 도움과 격리 조치(예: 회복 조치, 학교 내 정학, 학교 내 개입, 또래 중재, 수업에서 일시적 제외)	행정 도움과 단기 교외 격리조치(예: 회복조치, 멘토 프로그램, 단기, 장기 징학)	장기 행정 도움, 학교 밖으로의 격리조치, 인계 조치(예: 연장 정학, 퇴학)	
적절한 개입 수준을 결정할 때 6페이지의 "완화" 및 "가중"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례하게 구는 행동 (701) *반항은 무례함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언어 또는 서면으로 또는 심벌로 타인에게 적절하지 않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예: 비하하는 말, 욕, 말대답)					지속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무례함이 이루어지거나 학습환경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경우, 무례함은 방어로 간주됩니다.
	반복적 또는 계속 교사, 교직원, 학교 행정담당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따르기를 거부할 경우					

방해(704)	사소한 행동이 학습환경을 방해할 경우.				
		6학년-12학년			
	교습과 학습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간정도 또는 심각한 행동에 연관될 경우.		6학년-12학년		
			사람이나 재산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육 과정을 방해할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6학년-12학년		
	중요 또는 차별을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상당한 방해를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표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교육위원회 Policy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참조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조치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교실과 교사가 인도하는 조치(예: 서면으로의 사회, 학교 카운슬러와의 대화, 징학)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예: 지역사회 내 서비스)	행정 도움과 격리 조치 (예: 회복 조치, 학교 내 징학, 학교 내 개입, 또래 중재, 수업에서 일시적 제외)	행정 도움과 단기 교외 격리조치(예: 회복조치, 멘토 프로그램, 단기, 장기 징학)	장기 행정 도움, 학교 밖으로의 격리조치, 인계 조치(예: 연장 징학, 퇴학)	
적절한 개입 수준을 결정할 때 6페이지의 "완화" 및 "가중"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전자기기의 부적절한 사용 (802)⁴ MCPS에서는 이를 "개인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Personal Mobile Devices)" 또는 "PMD"라고 합니다. MCPS 규정 참조: COG-RA, 개인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Personal Mobile Devices); IGT-RA,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 전자정보, 네트워크, 보안 책임(User Responsibilities for Computer Systems, Electronic Information,)과 네트워크를 봅시다. 보안: MCPS Regulation ILA-RA 보안평가와 보고요건 (Assessments with Security and Reporting Requirements)을 봅시다.	MCPS의 개인 모바일 기기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지속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거나 보는 행위 ^{4,5}					MCPS 소유지 밖에서 발생하는 위반/부정 행위는 학습 환경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관계없이 학교 환경과 연결되어 다른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교육 환경을 방해하는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 후에도 MCPS의 PMD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거나 보는 행위	6학년-12학년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사생활을 침해하는 PMD를 사용한 정보 전달 행위; 학생이나 직원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외설적이거나 명예 훼손적인 내용; 학교 활동이나 MCPS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학문적 부정행위를 조장하거나; MCPS 컴퓨터 시스템, 관련 기술 또는 전자 정보(성과 또는 기타 학생 정보 포함)의 보안을 침해하는 행위			
			MCPS 네트워크 또는 운영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PMD를 사용하는 것(PMD를 사용하여 기록을 변경하거나 전자 자산을 파괴하는 것, 외부 프록시 또는 가상화된 브라우저와 함께 MCPS 장치를 사용하여 MCPS 네트워크를 방해하려는 시도 포함)			
복장 (706) MCPS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경고를 받은 후에도 복장규정을 어겼을 경우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복장규정을 어겼을 경우					

⁴개인 모바일 기기(Personal Mobile Device-PMD)의 세 가지 주요 특징: 1) MCPS의 소유나 지급 장비가 아닌 2) 인터넷, 와이파이 또는 셀룰러(모바일) 연결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함 3) 소리, 이미지, 영상 촬영 기능을 갖추고 있음

⁵만약 정보가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학생의 건강이나 안전의 위협, 음란 또는 외설적, 중상 비방적, 학교 활동의 방해요인, 타인의 일에 대한 표절, 상업적인 광고로 쓰일 경우는 개인 전화기기(personal mobile device-PMD)의 사용은 금지합니다.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조치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교실과 교사가 인도하는 조치(예: 서면으로의 사회, 학교 카운슬러와의 대화, 징학)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예: 지역사회 내 서비스)	행정 도움과 격리 조치(예: 회복 조치, 학교 내 정학, 학교 내 개입, 또래 중재, 수업에서 일시적 제외)	행정 도움과 단기 교외 격리 조치(예: 회복 조치, 멘토 프로그램, 단기, 장기 징학)	장기 행정 도움, 학교 밖으로의 격리 조치, 인계 조치(예: 연장 징학, 퇴학)	
	적절한 개입 수준을 결정할 때 6페이지의 "완화" 및 "가중"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201) Board Policy IG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남용 예방(Preventing Alcohol, Tobacco, Other Drug Abuse); MCPS Regulations: COF-RA, MCPS 소유지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조항(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s on MCPS Property)과 IGO-RA, 학생이 관련된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사용 사건에 관한 가이드(Guidelines for Incidents of Alcohol, Cannabis, Tobacco, and Other Drug Use Involving Students)			알코올의 영향 하에 있을 경우 ^{6,8}			혼욕적 조치의 일부로서 학교는 예방과 치료를 위해 Montgomery County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MCPS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추천/안내해야 합니다.
			알코올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6,8}			
			알코올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⁷			
흡연/흡입 (202)⁸ Board Policy IG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남용 예방(Preventing Alcohol, Tobacco, Other Drug Abuse); MCPS Regulations: COF-RA, MCPS 소유지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조항(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s on MCPS Property)과 IGO-RA, 학생이 관련된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사용 사건에 관한 가이드(Guidelines for Incidents of Alcohol, Cannabis, Tobacco, and Other Drug Use Involving Students)			흡연을 했을 경우 ^{5,7}			혼욕적 조치의 일부로서 학교는 예방과 치료를 위해 Montgomery County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MCPS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추천/안내해야 합니다.
			흡연하거나 흡연물을 소지한 경우 ^{6,8}			
			담배 등의 흡입제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7,9}			

⁶학생이 알코올, 마약, 약물을 취한 것을 발견할 경우, 학교에 보건 서비스가 없을 때에는, 학생을 진으로 보낸 후에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학생을 안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을 집으로 귀가조치하기 전, 학교는 학생이 가족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학교를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MCPS Policy IGN, Preventing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Abuse i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를 참조하십시오.

⁷학교에서의 혼욕 대상은, 배부하는 물건을 판매, 알코올, 약물, 마약/규제 약물의 판매 또는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⁸기통을 위해 장애 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코드 892를 사용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불법 약물"의 정의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전문인의 감독하에 사용, Controlled Substance Act 하에 사용 또는 기타 연방법 조항하에서 합법적으로 소지되지 않은 약물을 의미합니다.)

⁹기록을 위해 특수교육 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schedules of controlled substances in 21 U.S.C. § 812; 21 C.F.R. pt. 1308로 분류되는 마약 또는 약물을 판매한 경우 코드 891을 사용합니다.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조치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교실과 교사가 인도하는 조치(예: 서면으로의 사회, 학교 카운슬러와의 대화, 징학)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예: 지역사회 내 서비스)	행정 도움과 격리 조치 (예: 회복 조치, 학교 내 징학, 학교 내 개입, 또래 중재, 수업에서 일시적 제외)	행정 도움과 단기 교외 격리 조치(예: 회복 조치, 멘토 프로그램, 단기, 장기 징학)	장기 행정 도움, 학교 밖으로의 격리 조치, 인계 조치(예: 연장 징학, 퇴학)	
적절한 개입 수준을 결정할 때 6페이지의 "완화" 및 "가중"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약/규제약물 (203) ¹⁰ Board Policy IG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남용 예방(Preventing Alcohol, Tobacco, Other Drug Abuse); MCPS Regulations: COB-RA, 사건 보고(Incident Reporting); COFRA, MCPS 소유지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s on MCPS Property); 및 IGO-RA, 학생이 연루된 알코올, 대마초, 담배 및 기타 약물 사용 사건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Incidents of Alcohol, Cannabis, Tobacco, and Other Drug Use Involving Students); JPC-RA,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to Students			학생 약물 투여에 관한 규정 JPC-RA 학생에 대한 의약품 투여(Administration of Medication to Students)를 위반하여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약물을 스스로 휴대"하는 행위	행정 도움과 단기 교외 격리 조치(예: 회복 조치, 멘토 프로그램, 단기, 장기 징학)	장기 행정 도움, 학교 밖으로의 격리 조치, 인계 조치(예: 연장 징학, 퇴학)	
			학교 보건 간호사의 승인 없이 처방약을 (처방받은 사용자가) "자체 휴대"하는 것은 JPC-RA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JPC-RA 규정 또는 IGO-RA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하거나 소지하거나 그 영향을 받는 경우			
			일반 의약품을 공유, 판매, 소지 또는 사용하는 것			
			처방약을 공유, 판매, 소지 또는 사용하는 것			
				21세 미만의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비할 수 없는 약물이나 Maryland주에서는 합법적이거나 21세 미만의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없는 담배 및 카나비노이드와 같은 불법 약물이나 물질을 공유, 판매,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¹¹ (학생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대마초나 카나비노이드를 스스로 휴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훈육적 조치의 일부로서 학교는 예방과 치료를 위해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MCPS 프로그램 학생에게 추천/안내해야 합니다. 학교장/디렉터/대리인, Division of Safety and Emergency Management 또는 기법 집행 기관과 협의한 후, 해당 법 집행 기관이 사건에 대응하고 조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¹¹행동적 위험 평가를 학교의 훈육 결과 대체로 사용하거나 평가가 훈육 결과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조치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교실과 교사가 인도하는 조치(예: 서면으로의 사회, 학교 카운슬러와의 대화, 징학)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예: 지역사회 내 서비스)	행정 도움과 격리 조치(예: 회복 조치, 학교 내 정학, 학교 내 개인, 또래 중재, 수업에서 일시적 제외)	행정 도움과 단기 교외 격리조치(예: 회복조치, 멘토 프로그램, 단기, 장기 정학)	장기 행정 도움, 학교 밖으로의 격리조치, 인계 조치(예: 연장 정학, 퇴학)	
적절한 개입 수준을 결정할 때 6페이지의 "완화" 및 "가중"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담배(204) Board Policy IG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남용 예방(Preventing Alcohol, Tobacco, Other Drug Abuse); MCPS Regulations: COB-RA, 사건 보고(Incident Reporting); COFRA, MCPS 소유지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s on MCPS Property); 및 IGO-RA, 학생이 연루된 알코올, 대마초, 담배 및 기타 약물 사용 사건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Incidents of Alcohol, Cannabis, Tobacco, and Other Drug Use Involving Students); JPC-RA,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to Students 나비노이드는 "약물/통제 물질 (203)"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규정 IGO-RA에 정의된 흡연 도구(시가, 담배, 파이프,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를 사용, 소지(휴대), 보유 또는 유통하는 행위. 이는 흡연을 모방하는 모든 종류의 제품이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대마초를 직접 휴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육적 조치의 일부로서 ⁶ , 학교는 예방과 치료를 위해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MCPS 프로그램들 학생에게 추천/안내해야 합니다.
---	---	--	--	--	--	--

학업 및 시험 부정행위 (801) *참조 MCPS Regulation IKA-RA: 성적 평가 및 성적 보고(Grading and Reporting) 참조	타인의 작품이나 생각을 사용하는 것: 교사나 학부모/후견인의 서명을 가짜로 쓰는 위조; 또는 시험 부정행위.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은 평가시험이나 다른 채점되는 과제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개시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MCPS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시험에서 방해를 하거나 방해할 하도록 돕는 행위. 평가시험이나 다른 채점되는 과제의 정보를 계속적으로 또는 폭넓게 배포하는 행위.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교실과 교사가 인도하는 조치(예: 서면으로의 사죄, 학교 카운슬러와의 대화, 장학)	조치 단계 2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예: 지역사회 내 서비스)	단계 3 행정 도움과 적리 조치 (예: 회복 조치, 학교 내 정화, 학교 내 개입, 또래 중재, 수업에서 일시적 제외)	단계 4 행정 도움과 단기 교외 적리조치(예: 회복조치, 멘토 프로그램, 단기, 장기 정화)	단계 5 장기 행정 도움, 학교 밖으로의 적리조치, 연계 조치(예: 연장 정학, 퇴학)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적절한 개입 수준을 결정할 때 6페이지의 "완화" 및 "가중"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절도(803) MCPS Regulation COB-RA, Incident Reporting	1-5학년	6학년-12학년	500달러 미만의 가치가 있는 물건/소유물을 취득 또는 획득하는 행위			강도/강도미수는 즉시 범 집행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범 집행 기관은 조사를 주도해야 합니다. 학교장/디렉터/대리인, Division of Safety and Emergency Management 또는 기법 집행 기관과 협의한 후, 해당 범 집행 기관이 동일한 학생이 저지른 단일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도난당한 재산의 가치가 1,500달러 이상인 경우 대응하고 조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다음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생이 물건/소유물을 취하려는 의도 • 물건/소유물의 금전적 가치 • 학생의 행동이 순간적인 행동인지 계획된 행동인지의 여부. • 물건/소유물이 값어치가 나가거나 대체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하는지의 여부. • 물건/소유물을 돌려주었거나 복귀시켰는지 여부.
		6학년-12학년				
				5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소유물을 취득 또는 획득하는 행위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교실과 교사가 인도하는 조치(예: 서명인원의 사죄, 학교 카운슬러와의 대화, 정학)	조치 단계 2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예: 지역사회 내 서비스)	단계 3 행정 도움과 격리 조치 (예: 회복 조치, 학교 내 정학, 학교 내 개입, 오래 중재, 수업에서 일시적 제외)	단계 4 행정 도움과 단기 교외 격리조치(예: 회복조치, 멘토 프로그램, 단기, 장기 정학)	단계 5 장기 행정 도움, 학교 밖으로의 격리조치, 인계 조치(예: 연장 정학, 퇴학)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적절한 개입 수준을 결정할 때 6페이지의 "원화" 및 "가중"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물 파손(806) 다음 규정을 함께 참고합니다: COG-RA, 개인 모바일 기기 (Personal Mobile Device), ECC- RA, MCPS 재산의 분실 또는 훼손(Loss of or Damage to MCPS Property), ECG- RA, 주차 시설 및 학생 운전 (Parking Facilities and Student Driving), JNA-RB, 학생 재정 의무의 징수(Collection of Student Financial Obligations)	6학년-12학년					범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학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생이 물건/소유물을 취하려는 의도 • 물건/소유물의 금전적 가치 • 학생의 행동이 순간적인 행동인지 계획된 행동인지의 여부. • 물건/소유물이 값어치가 나가거나 대체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하는지의 여부. • 학생이 물건/소유물을 파손한 이유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성별, 장애, 노숙 상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을 훼손한 경우, 해당 행위는 즉시 관할 법 집행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기물 파손 행위는 발견 후 1시간 이내에 Division of Safety and Emergency Management에 보고해야 하며, 규정 COB- RA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고에 인한 파손					
			6학년-12학년			
		MCPS, 교직원, 다른 학생의 재산에 고의적으로 \$500 미만의 피해를 입힌 경우.				
				6학년-12학년		
			MCPS, 교직원, 다른 학생의 재산에 고의적으로 \$500 또는 그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인종, 종교,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기반한 증오 또는 차별을 조장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미지나 상징을 표시하는 행위로 인해 학교나 교육구의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조치 단계 1	조치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교실과 교사가 인도하는 조치(예: 서면으로의 사회, 학교 카운슬러와의 대화, 징학)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예: 지역사회 내 서비스)	행정 도움과 격리 조치(예: 회복 조치, 학교 내 정학, 학교 내 개입, 또래 중재, 수업에서 일시적 제외)	행정 도움과 단기 교외 격리조치(예: 회복조치, 멘토 프로그램, 단기, 장기 징학)	장기 행정 도움, 학교 밖으로의 격리조치, 인계 조치(예: 연장 징학, 퇴학)		
적절한 개입 수준을 결정할 때 6페이지의 "완화" 및 "가중"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적 행위(603)		성에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예: 음란적 노출, 성에 관련된 부적절한 문자, 학교 소유지에서의 성행위)			학육적 조치의 일부로서 교직원은 학생을 적절한 카운슬링에 연계해야 합니다. 강간 또는 비동의 성적 행위는 즉시 관할 법 집행 기관에 보고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이 사건 대응 및 수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Regulation COB-RA, Incident Reporting	
*성적 공격(601) *Department of Student Code and Appeals에의 연락과 같은 MCPS 보고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타인에게 신체적,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에 연관된 경우		학육적 조치의 일부로서 교직원은 학생을 적절한 카운슬링에 연계해야 합니다. 강간 또는 비동의 성적 행위는 즉시 관할 법 집행 기관에 보고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이 사건 대응 및 수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Regulation COB-RA, Incident Reporting	
*성희롱(602) Board Policy ACF, JHF; MCPS Regulations ACF-RA, ACI-RA, COB-RA			상대가 싫어하는 성적인 접근, 성관계 요구 및/또는 타인을 향한 부적절한 성적인 말/글/신체적인 행위.		학육적 조치의 일부로서 교직원은 학생을 적절한 카운슬링에 연계해야 합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와 협의하며, 학교는 적절한 조치 및 결과를 결정할 때 나이, 학년, 발달 수준, 이전 위반 사항, 의도적인지와 상황에 따른 것인지를 고려하며 법을 준수하여 대응을 합니다.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교실과 교사가 인도하는 조치(예: 서면으로의 사회, 학교 카운슬러와의 대화, 징학)	조치 단계 2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예: 지역사회 내 서비스)	단계 3 행정 도움과 격리 조치(예: 회복 조치, 학교 내 정학, 학교 내 개입, 또래 중재, 수업에서 일시적 제외)	단계 4 행정 도움과 단기 교외 격리조치(예: 회복조치, 멘토 프로그램, 단기, 장기 징학)	단계 5 장기 행정 도움, 학교 밖으로의 격리조치, 인계 조치(예: 연장 정학, 퇴학)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적절한 개입 수준을 결정할 때 6페이지의 "원화" 및 "가중"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왕따 (407) Board Policy ACF, JHF; MCPS Regulations ACF-RA, ACI-RA, COB-RA, JHF-RA		약자 괴롭힘/왕따/불링/학교 폭력(BULLYING)이란 Policy JHF 금지된 행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 간의 원하지 않는, 모욕적인 행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희롱(HARASSMENT)—개인의 실제 또는 인지된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상대를 불쾌하게 하거나,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실제 또는 인지된 부정적인 행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위협/협박(INTIMIDATION)—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두려움이나 열등감을 유발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보복(Retaliation) 또는 앙갚음(reprisal)은 협박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오 또는 차별을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상당한 방해를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표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현유적 조치의 일부로서 학교는 개입/중재 방법을 강조하고 학생을 적절한 카운슬링에 연계해야 합니다.
성인협박(403) 학생협박(404) Board Policy COA; MCPS Regulation COA-RA	교직원, 학생, 타인에게 행하는 협박적 언어(말, 글/전자, 직접/간접적) 또는 신체적 행동의 사용			징계 조치와 더불어, 학교는 **행동 위협 평가(Behavior Threat Assessment)**를 실시해야 합니다.
금품강탈(406) MCPS Regulation COB-RA	협박, 공포, 폭력(무기 미사용)으로 타인의 물건을 뺏는 행위. 협박, 공포, 폭력(무기를 사용하지 않는)으로 타인의 물건을 뺏는 행위.			징계 조치와 더불어, 학교는 **행동 위협 평가(Behavior Threat Assessment)**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보기 허위작동(50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나 재난 경보를 고의로 발령하는 행위(예: 전화, 개인 모바일 기기(PMD), 또는 직접적으로 —화재경보 장치 작동, 911 오용 등)나 소방기구(소화기 등)를 이유 없이 작동시키는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장/디렉터/대리인, Division of Safety and Emergency Management 또는 기법 집행 기관과 협의한 후, 해당 법 집행 기관이 사건에 대응하고 조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교실과 교사가 인도하는 조치(예: 서면으로의 사죄, 학교 카운슬러와의 대화, 징학)	조치 단계 2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예: 지역사회 내 서비스)	단계 3 행정 도움과 격리 조치 (예: 회복 조치, 학교 내 징학, 학교 내 개입, 또래 중재, 수업에서 일시적 제외)	단계 4 행정 도움과 단기 교외 격리조치(예: 회복조치, 멘토 프로그램, 단기, 장기 징학)	단계 5 장기 행정 도움, 학교 밖으로의 격리조치, 인계 조치(예: 연장 징학, 퇴학)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적절한 개입 수준을 결정할 때 6페이지의 "완화" 및 "가중"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폭파위협(502) MCPS Regulation COB-RA, Incident Reporting 참조					폭파협박이나 총격협박을 하는 것.	징계 조치와 더불어, 학교는 **행동 위험 평가(Behavior Threat Assessment)**를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장/디렉터/대리인, Division of Safety and Emergency Management 또는 기법 집행 기관과 협의한 후, 해당 법 집행 기관이 사건에 대응하고 조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단침입(804) *MCPS Regulation COB- RA: Trespassing or Willful Disturbance on MCPS Property(MCPS의 구역 무단출입 혹은 고의적 소란 행위) 참조.	정학과 퇴학을 포함한 처벌시 허락 없이 MCPS 소유지에 들어오는 것.				소란을 일으키거나, 싸우고, 다른 학생이나 직원을 공격하거나, 재산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침입하는 행위.	증오심, 혐오를 조장하는 언어 또는 이미지 및/또는 심벌을 표시하는 것은 특정 사건에서 징계 대응 수준을 높이는 가중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위반 행위의 예로는, 이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싸움, 학생이나 교직원을 공격하는 행위, 또는 약물 관련 위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조치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교실과 교사가 인도하는 조치(예: 서면으로의 사회, 학교 카운슬러와의 대화, 징학)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예: 지역사회 내 서비스)	행정 도움과 격리 조치(예: 하복 조치, 학교 내 정학, 학교 내 개입, 또래 중재, 수업에서 일시적 제외)	행정 도움과 단기 교외 격리조치(예: 하복 조치, 멘토 프로그램, 단기, 장기 징학)	장기 행정 도움, 학교 밖으로의 격리조치, 인계 조치(예: 연장 징학, 퇴학)	
	적절한 개입 수준을 결정할 때 6페이지의 "완화" 및 "가중"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인공격(401) MCPS Regulation COB-RA, Incident Reporting			이도적으로 밀치거나 밀거나 기타 신체적 공격을 가하는 등 MCPS 직원이나 다른 성인을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싸움을 벌이는 행위; 또는 싸움이나 기타 파괴적인 행동을 예방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개입하는 직원을 의도적으로 때리는 행위.			학생이 행동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려스러운 성격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 교사 및 기타 학교 직원은 제시된 우려 사항을 문제 해결하고 학생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계획할 자격이 있고 훈련된 적절한 팀에 학생을 의뢰해야 하며, 규정 IOH-RA, 학생을 위해 행동 건강 서비스로의 연계(Referrals to Behavioral Health Services for Students)에 명시된 대로 학생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계획해야 합니다. 동일한 행동이 이전에 발생했거나 ACA 강제 및 JFA-RA 규정에 명시된 이미지 또는 기호를 사용한 경우, 개입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디렉터/대리인, Division of Safety and Emergency Management 또는 기법 집행 기관과 협의한 후, 해당 법 집행 기관이 사건에 대응하고 조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공격(402) MCPS Regulation COB-RA, Incident Reporting	이도적으로 거칠게 밀치거나 밀거나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강하게 행동한 경우를 포함한 MCPS 학생을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예: 몸수색, 의도적인 부딪침. 단 거칠게 부딪치며 노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학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생의 행동이 순간적인 행동인지 계획된 행동인지의 여부. • 학생이 도발/악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생이 싸우도록 도발했는지의 여부 • 학생이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행동했는지 여부. 학교장/디렉터/대리인, Division of Safety and Emergency Management 또는 기법 집행 기관과 협의한 후, 해당 법 집행 기관이 사건에 대응하고 조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열된 요인에 따라 사지가 부러지거나 특히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MCPS 학생을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경우.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교실과 교사가 인도하는 조치(예: 서면으로의 사죄, 학교 카운슬러와의 대화, 징학)	조치 단계 2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예: 지역사회 내 서비스)	단계 3 행정 도움과 격리 조치 (예: 회복 조치, 학교 내 징학, 학교 내 개입, 또래 중재, 수업에서 일시적 제외)	단계 4 행정 도움과 단기 교외 격리조치(예: 회복조치, 멘토 프로그램, 단기, 장기 징학)	단계 5 장기 행정 도움, 학교 밖으로의 격리조치, 인계 조치(예: 연장 징학, 퇴학)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적절한 개입 수준을 결정할 때 6페이지의 "완화" 및 "가중"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싸움(405)	가벼운 상처, 긁힘, 타박상을 초래하는 싸움에 연관된 경우			6학년-12학년		
	나열된 요인에 따라 사지가 부러지거나 특히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의 싸움에 연류/참여한 경우			6학년-12학년		
				학교 운영을 방해하거나 팔다리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집단 싸움에 연류/참여한 경우		
*Board Policy JHF, 약자 괴롭히기/왕따, 괴롭힘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와 MCPS Regulation JHF-RA, 학생 약자 괴롭히기/왕따, 괴롭힘 및 협박 행위(Student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와 MCPS Form 230-35, 약자 괴롭히기/왕따, 괴롭힘 및 협박 행위 신고 양식(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 참조. **MCPS Regulation JHG-RA, 갱, 갱활동 및 기타 유사 범죄 및 불법 단체 행동 예방(Gangs, Gang Activity, or Other Similar Destructive or Illegal Group Behavior Prevention)과 MCPS Form 230-37, 갱관련 사건 신고 양식(Gang-Related Incident Reporting Form)을 보십시오.				학교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생의 행동이 순간적인 행동인지 계획된 행동인지의 여부. - 또한, 학생이 도발을 받아 정당방위로 행동했는지, 혹은 다른 사람을 싸움에 가담하도록 도발했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학생이 폭력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행동을 취했는지, 또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개인하여 학생들을 떨어뜨려 놓으려 했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심각한 신체상해(408)	고의 아니게 심각한 신체상해를 유발하는 행동에 혹은 무의식 상태의 결과를 낳은 행동에 연관된 경우	고의적으로 심각한 신체상해를 유발하는 행동에 연관된 경우

방화/화재(501)	타인을 해칠 의도없이 방화를 하거나 방화를 도운 경우	타인을 해치거나 타인 소유물을 파괴할 의도로 방화를 하거나 방화를 도운 경우
	타인을 해칠 의도없이 방화를 하거나 방화를 도운 경우	타인을 해치거나 타인 소유물을 파괴할 의도로 방화를 하거나 방화를 도운 경우

화재경보 (301)			총기류 소지 (예: 권총) ¹¹	사건은 DSSEM 뿐만 아니라 해당 법 집행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사법 당국은 다음 사항에 대한 대응과 조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Regulation COB-RA, Incident Reporting 참조

¹¹법정부는 Maryland 주 법: 화기/총포 무기를 학교 영역에 가지고 온 학생은 "최소한 1년 이상의 퇴학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카운티 교육청은 이를 상황참작을 하여 더 짧은 기간의 퇴학조치 또는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인가할 경우, 대체교육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MD. ANN. CODE, EDUCATION § 7-305(f)(2)-(3); COMAR 13A.08.01.12-1. 그러나 징학, 퇴학, 임시 대체공간을 포함한 학교 영역에 화기/총포무기를 가지고 온 장애학생의 운목은 IDEA의 요건에 따라 실행합니다. MD. ANN. CODE, EDUCATION § 7-305(g); COMAR 13A.08.01.12-1(C). 기록을 위해 특수교육 학생의 경우, 코드 893 사용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조치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교실과 교사가 인도하는 조치(예: 서면으로의 사회, 학교 카운슬러와의 대화, 징학)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예: 지역사회 내 서비스)	행정 도움과 격리 조치(예: 화복 조치, 학교 내 정학, 학교 내 개입, 또래 중재, 수업에서 일시적 제외)	행정 도움과 단기 교외 격리 조치(예: 화복 조치, 멘토 프로그램, 단기, 장기 징학)	장기 행정 도움, 학교 밖으로의 격리 조치, 인계 조치(예: 연장 정학, 퇴학)	
적절한 개입 수준을 결정할 때 6페이지의 "완화" 및 "가중"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타 총기류(302) *참조 MCPS Regulation COE-RA, 무기류(Weapons)			모형 또는 유사 총기류를 소지한 경우(예: 장난감 총, 물총 또는 그 외 실제 총기와 유사한 외형의 물건)	휘두르다(Brandish)란, 분노나 흥분 상태에서 위협의 의도로 무기를 흔들거나 내보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탄환 발사 기능이 있는 총기류 소지 (예: 비비탄총, 펠렛총, 캠건, 젤 블라스터, 에어소프트건 등)			
			화기가 아닌 총(예: BB, 총알, 캠, 젤 블라스터 또는 에어소프트건)을 휘두르거나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칼과 기타 흉기(303) *참조MCPS Regulation COE-RA, 무기류(Weapons)	흉기로 사용할 의도 없이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칼이나 기타 흉기나 물건을 소유할 경우			휘두르다(Brandish)란, 분노나 흥분 상태에서 위협의 의도로 무기를 흔들거나 내보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흉기로 사용할 의도로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칼이나 기타 흉기나 물건을 소유할 경우			
			칼이나 기타 도구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과시하거나, 휘두르며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힐 의도를 가진 행위	

폭발물(503) *MCPS Regulation COB-RA, Incident Reporting 참조	사람이나 소유물을 해칠 수 있는 병화 또는 폭발 물질, 자문 또는 총기 외의 모든 형태의 석어서 가연성 또는 폭발되는 물질을 소유한 경우 (예: 폭죽, 연기폭죽, flare 폭죽, "snap pops"는 혼란을 유발하여 협박을 할 수 있으므로 제외)		위에서 명시한 대로 병화 또는 폭발 기기 또는 물질을 폭발, 소유, 협박하는 행위.

행동 중재

행동 계약	수업과 같이 학교 교직원이 만든 정식 계획을 시행하는 동안 학생이 행한 부적절 또는 방해가 되는 행동을 고치기 위해, 긍정적 행동개입, 전략, 보조/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카운슬러/ 주임 스페서리스트 확인합니다.	학교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학생과 관계가 있는 학교 카운슬러, 리소스 교사, 학교 심리학자, 학교 소셜워커, 코치 등에게 비공식 체크인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교실에서의 훈육 조치	즉각 학생의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타임아웃, 교사 학생 면담, 생각하는 의자, 재지도(롤플레이), 좌석 변경, 학부모에게 연락, 교실 내에서의 특혜 상실 또는 용서를 구하는 편지 등과 같이 교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치/지도를 합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학생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예: 수프키친, 공공장소 청소 또는 연장자를 위한 시설에서의 도움) 참고: 이러한 활동에의 시간은 "학생 봉사 학습(Student Service Learning)"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갈등해결	(학교에서 또는 외부에서 시작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학생이 책임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방법을 사용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후견인과 교사 및 교직원 그리고/또는 학교장은 갈등 조정과 분노조절,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와 효과적 의사소통 등과 같은 문제해결능력과 기술을 향상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격리(디텐션)	학생은 지정된 기간동안 학교 시작 전, 쉬는 시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지정된 교실에 가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훈육 조치 전에 학부모/후견인에게 연락해야만 합니다.
격리(정학)	학생이 45일 이상 학생의 일상 학과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학부모/후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이 정학 전에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게 되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을 다치게 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학교에 돌아오는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학생이 격리되는 기간을 실행가능한 제일 짧은 기간으로 제한합니다. 교육 시스템은 수업시간에서 격리되는 학생에게 비슷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상수업으로 돌아갔을 때 성공적일 수 있도록 행동개선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MAR 13A.08.01.11(B)(2)(a -c)
기능 중심의 행동 평가와 행동 중재 계획	기능 중심의 행동평가 (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FBA) (MCPS Form 336-64)는 학생의 부적절하거나 방해가 되는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직원이 이를 고치기 위해 또는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는 학생을 위한 행동 중재 계획 (MCPS Form 336-65 사용)을 개발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 FBA를 사용하여, 교직원팀과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은 적절한 행동 목표와 문제행동 예방과 대응을 위한 중재와 대체 또는 대신하는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교내 중재	학교 건물 내의 학생의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다음을 계속할 기회는 제공됩니다. (i) 일반 교과과정에 따라 적절하게 진도가 나가는 교습을 받습니다. (ii) 법에서 규정한 대로 학생이 장애가 있을 경우, 특수교육 또는 학생의 IEP에서 명시한 대로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습니다. (iii) 프로그램에 맞는 교습을 일반 수업시간에서 받습니다. (iv) 적절하다면, 학생이 현재 받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급우와 함께 참여합니다. COMAR 13A.08.01.11(C)(2)(a)
멘토 프로그램	(비공식 및/또는 학교차원에서 예방) 학생의 개인, 학업 사회적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와 연결합니다. (예: 카운슬러, 교사, 같은 또래 친구, 지역사회원)

행동 중재(계속)

부모 아웃리치	부적절하거나 방해가 되는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의 행동을 학부모/후견인에게 알려, 학부모/후견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습니다.
학부모/후견인과 학생/교사 면담	학생과 학부모/후견인과 교사 및 교직원 그리고/또는 학교장이 함께 학생의 행동과 행동에 따른 사회, 학업, 개인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또래(peer) 중재	훈련받은 학생이 중재자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문제 해결방법을 적용합니다.
추가조치 권고	학생을 학교 행정담당에게 장기 정학, 퇴학, 대체 교습으로의 인계 또는 법 집행 기관으로의 연락 권고합니다.
대체교육으로의 인계	대체 프로그램의 배치를 MCPS Regulation IOI-RA, Placement Procedures for Alternative Programs에 따라 학교 행정담당에게 추천합니다.
적절한 약물중독 기관으로의 인계 카운슬링 서비스	학교장이나 대리인에게 상의를 하여 약물남용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는 지역 건강담당부서 또는 커뮤니티 내의 서비스 제공 기관 등과 같은 학교 내외의 서비스기관에 학생을 인계합니다.
커뮤니티 내 기관에의 인계	학교장이나 대리인에게 상의를 하여, 학생을 방과 후 프로그램, 개인 또는 그룹 카운슬링, 리더십 개발, 갈등/분쟁 해결 및 개인 교습 등 다양한 서비스에 인계합니다.
건강/정신 건강 서비스로의 인계	학교장이나 대리인에게 상의를 하여, 학생을 학생이 필요한 카운슬링과 평가를 제공하는 학교 또는 지역사회 내의 건강 및 정신건강 클리닉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에 인계합니다. 학생은 성공적인 학업에 방해가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적절하고 방해가 되는 문제나 염려되는 점을 조용히 개인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점을 이겨낼 수 있는 목표와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분노 조절반과 공식 또는 비공식 행동지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의 인계 지원팀	학교장 또는 대리인과의 면담/상담에는 학교 카운슬러 학생담당관, 교사, 학교장, 소셜워커, 의료서비스제공자,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심리학자, 학생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고안된 예방과 중재 기술과 대체 전략개발을 돕는 외부 기관 케이스 매니저 등과 같은 학생을 돕는 지원팀을 동반합니다. 만약 학생 지원 팀이 만든 계획을 적용하였음에도 향상되지 않을 경우는, 학교팀은 MCPS Regulation IOI-RA, Placement Procedures for Alternative Programs에 따른 대체 계획 배치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의 격리 또는 혜택상실	학교장/대리인과 상의하여 운동, 동아리/클럽 등을 포함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못하게 되거나 현장학습이나 학교 댄스 등을 포함한 학교 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박탈합니다. 만약 학생이 이에 해당될 경우, 빠지게 되는 활동에 지불한 비용은 가능한 경우, 환불이 됩니다.
손해배상	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잃거나 파손되거나 다친 경우 배상/보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은 금전적 배상 및 학생을 학교 업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는 실행 배상 중 하나 또는 양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COMA 13A.08.01.11(D)에 따라 학생이 주 또는 카운티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교육구/학교 소유물이나 학교 소유가 아닌 다른 소유물을 파손, 파괴하거나 가치를 낮추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생, 학생의 학부모/후견인 및 적절한 개인과 함께 회의를 진행한 후, 학생 또는 학생 학부모/후견인 또는 적절한 사람에게 복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금전적 배상은 2,500불 또는 기물/소유물의 금전적 가치 중 금액이 적은 것으로 지불합니다.

행동 중재(계속)

회복 조치의 적용	(교실에서 또는 전문가의 주관으로) 회복조치는 온전한 학교 환경의 유지 및 조성과 적절한 사회적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회복 조치는 사건의 사람에 관한 상해를 포함한 모든 상해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치, 연습을 통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위한 계획도 개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MCPS Regulation JGA-RB, 정학/제적(Suspension or Expulsion)을 봅시다.
학교 또는 커뮤니티에서의 회의	학생과 교직원, 그 외에 갈등에 연루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제, 문제의 해결, 해결방법의 제안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합니다. (예: “Daily Rap,” “Morning Meetings”)
정학(단기. 학교 외)	학생이 3일(학사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일상 학과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경우, 훈육 사유를 학부모/후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학(장기. 학교 외)	학생이 4일-10일 이내에 학생의 일상 학과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경우, 훈육 사유를 학교장을 통해 학부모/후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학(학교내)	학생을 10일(학사일) 미만 일상 학과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교장은 훈육 사유를 학부모/후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학(연장. 학교 외)	학생이 연장 정학으로 11-44일 이내에 학생의 일상 학과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학부모/후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다음 여부를 결정합니다. a. 학생이 정학기간 전에 학교에 돌아오게 될 경우,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을 다치게 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b. 학생이 교육제공과정에 만성적으로 심각하게 방해가 되었을 경우, 교습시간에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대체 방어를 준비해야 하며 가능하고 적절한 행동과 훈육 중재를 다 사용해 본 경우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학생이 격리되는 기간을 실행가능한 제일 짧은 기간으로 제한합니다. 교육 시스템은 수업시간에서 격리되는 학생에게 비슷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상수업으로 돌아갔을 때 성공적일 수 있도록 행동개선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실에서의 임시 격리조치	학교 건물 내의 학생의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수업시간 격리는 한 시간 미만입니다.

행동 중재, 안전과 웰빙(BEHAVIOR INTERVENTION, SAFETY, AND WELL-BEING)을 위한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

Policy ACA, 차별금지, 형평성, 문화적 이해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학생의 성적 위법행위와 성희롱(Sexual Misconduct and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
Policy ACI, 직원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 of Employees)
정책 COA, 학생의 안녕과 학교 안전(Student Well-being and School Safety)
Policy EEA, 학생 교통편(Student Transportation)
Policy IG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서의 알코올, 대마초, 담배, 기타 마약 남용 예방(Preventing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Abuse i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Policy IGA, 학생을 위한 사회 정서적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래밍 서비스(Social Emotional and Mental Health Programming and Services for Students)
Policy JFA, 학생의 권리와 의무(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Policy JGA, 행동 중재, 안전과 웰빙 계획(Behavior Interventions, Safety and Well-being Plan)
Policy JHF, 악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gulation ACA-RA,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Regulation ACF-RA, MCPS 학생의 Title IX 성희롱 조사(Investigation of Title IX Sexual Harassment of MCPS Students)
규정 ACG-RB, 1973년 504 장애법에 해당되는 학생을 위한 적절한 조정 및 수정(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Modifications for Students Eligible Under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Regulation COA-RA, 행동적 위협 평가(Behavior Threat Assessment)
Regulation COC-RA, MCPS의 구역 무단출입 혹은 고의적 소란 행위(Trespassing or Willful Disturbance on MCPS Property)
Regulation COE-RA, 무기류(Weapons)
Regulation COF-RA,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소유 지역 및 영역에서의 알코올, 대마초, 담배, 기타 약물(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s 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Property)
Regulation COG-RA, 휴대 전화기기(Personal Mobile Devices)
Regulation ECC-RA,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소유 지역 및 영역의 재산 손실(Loss of or Damage to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Property)
Regulation EEA-RA, 학생 교통편(Student Transportation)
Regulation EEB-RA, MCPS 버스 운영(Operation of Care of MCPS Buses)
Regulation IGO-RA: 학생이 관련된 알코올, 대마초, 담배, 기타 약물 남용건에의 지침(Guidelines for Incidents of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Abuse Involving Students)
Regulation IGT-RA,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망 보안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User Responsibilities for Computer Systems and Network Security)
Regulation IOI-RA, 대체 프로그램을 위한 배정 절차(Placement Procedures for Alternative Programs)
Regulation JEA-RA, 학생의 출석(Student Attendance)
Regulation JEE-RA, 학생 전학(Student Transfers and Administrative Placements)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Regulation JGA-RA, 학급 운영과 학생 행동중재(Student Behavior Interventions)
Regulation JGA-RB, MCPS 학생의 정학/제적(Suspension or Expulsion)
Policy JGA-RC, 장애 학생의 정학과 제적(Suspension and Expul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gulation JGB-RA, 수색과 압수(Search and Seizure)
Regulation JHF-RA, Student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gulation JHG-RA, 갱, 갱활동 및 기타 유사 방해 및 불법 단체 행동 예방(Gangs, Gang Activity, or Other Similar Destructive or Illegal Group Behavior Prevention)
Regulation JNA-RB, 학생의 재정 의무(Collection of Student Financial Obligations)
Regulation JPC-RA, 학생에 대한 의약품 투여

MCPS 차별 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 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 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A.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1)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 상태, 성적 지향, 성적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 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 정보와 연방, 주 또는 지방 관련 요건은 버전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문서에 포함된 진술과 참고자료보다 우선됩니다.

최신 정보는 온라인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Compliance and Appeals Division of Equ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850 Hungerford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15 West Gude Drive, Suite B4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
Section 504 Coordinator Division of Specialized Support Services, School Counseling Services Unit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987-8031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15 West Gude Drive, Suite B4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Division of Equ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Student Compliance and Appeals 850 Hungerford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61 Forsyth St. S.W., Suite 19T10, Atlanta, GA 30303, 404-974-9406 and TDD: 800-877-8339, OCR.Atlanta@ed.gov, 1-800-421-3481, 1-800-877-8339(TDD), 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하십시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하십시오.



Division of Communications 발행
0834.25 • Editorial, Graphics & Publishing Services • 9/25 • NP
Copyright © 2025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Rockville, Maryland

